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7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물림사고 발생 현황 관리 등을 위한 법 체계 정비	3
2. 맹견사육허가 갱신제의 도입	9
3. 맹견의 관리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6.

다. 회 부 일 : 2026.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고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맹견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육허가 완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별도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가 이후 맹견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물림사고 관리체

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의 경우 외출 시 사육허가 여부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미부착 또는 타인 대여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육 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 시 소유자등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물림사고 발생 현황 관리 등을 위한 법 체계 정비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고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정정하고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u>말소할 수 있다</u> .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u>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경우</u>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현행	개정안
<신설>	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유자 정보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 2.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 서장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해 당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명령할 수 있다.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 소유 자: 기질평가의 재실시, 교육이 수 또는 훈련 명령 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맹견 소유자: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 허가 신청 명령 3. 그 외: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현행	개정안
	실시 명령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및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정의¹⁾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②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③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²⁾하는 등 ‘동물등록제³⁾’를 시행하고 있음.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2)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①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②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며, ③ 인식표를 부착하고, ④ 배설물을 수거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⁴⁾⁵⁾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상자의 구조 및 이송은 소방청 소관으로, 소유자등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고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는 한계⁶⁾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개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 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건)	2,114	2,197	2,216	2,235	1,980

※ 자료 : 소방청

이에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고 사실을 통지받고, 해당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재(등록의 정정)하며,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참고자료1: 동물등록제 개요

4) 뉴스1,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허점은 맹견 아닌 ‘일반견’, 법적 제재 없어’, 2025. 5. 14.

5) SBS뉴스, “‘입마개 안 한 맹견이 놀이터를’ 지적에…“사진 찍으려 풀었다””, 2024. 6. 27.

6)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물림 사고 건수’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며, 다만 ‘개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 현황’이라는 대인사고 통계만을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함. ‘개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 현황’ 통계에는 사고건의 맹견 여부나 견종 등의 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물림사고의 발생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본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사고를 발생시킨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도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6조제5항제3호는 사고를 발생시킨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⁷⁾에 따른 기질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항은 ‘시·도지사’가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령의 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⁸⁾할 것으로 보임.

7)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개물림 사고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8) 이와 관련하여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 2216191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경우에도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의 주체를 여전히 시·도지사라고 하고 있음.

2. 맹견사육허가 갱신제의 도입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정기 교육은 의무는 삭제하되, 동 교육을 맹견사육허가 갱신 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1조, 제101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u> <u>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생략) ② (생략) <u>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u>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	개정안
<u>육을 받아야 한다.</u>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u>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u>을 받지 아니한 자 4. ~ 18.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맹견 <u>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u> 4. ~ 1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현행법령은 ①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와 ②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맹견으로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⁹⁾하고 있으며,

9)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맹견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여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 제도¹⁰⁾를 규정하고 있음.

【 맹견사육허가 신청 현황 (‘25.9월 기준) 】

구 분		개 체 수
등록(A)		1,656마리
허가	신청(B)	352마리
	완료	276마리
	신청률(B/A)	21.3%
미허가		1,304마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맹견사육허가 이후에도 책임보험 가입 유지¹¹⁾, 정기교육 이수¹²⁾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맹견사육허가 갱신 시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맹견의 월령 및 사육환경 변화에 따른

10) 참고자료 2: 맹견 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개요

11) 「동물보호법」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질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정기 교육 의무 및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되, 동 교육을 맹견사육허가 갱신 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과도한 부담을 없애고 교육이수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 이후에도 맹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맹견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¹³⁾,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 2216191호)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미국(1년, 주별 상이), 싱가포르(3년), 독일(5년, 주별 상이), 스페인(5년) 등

3. 맹견의 관리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으로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의 부착 의무와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의 신고 의무를 추가하고,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u>할 것</u>	2. ----- ----- ----- ----- ----- ----- <u>하고,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할 것</u>
<u><신설></u>	<u>2의2.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할 것</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u>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u>을 받지 아니한 자 4. ~ 18.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u>소유자등</u> 6. 7. (생략) ⑤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u>맹견 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u>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u>인식표를 대여받은 자</u> 4. ~ 1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소유자등(맹견의 경우 제외한다)</u> 6.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은 맹견의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으로 ①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②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¹⁴⁾ 및 입마개¹⁵⁾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¹⁶⁾를 하도록 하는 등¹⁷⁾의 규정¹⁸⁾을 두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으로 ①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②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며, ③ 인식표를 부착하고, ④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¹⁹⁾을 두고 있음.

14)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15)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16)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17) 그 외에 ①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②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③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등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④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이 있음.

18)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19)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²⁰⁾²¹⁾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여러 건의 인식표 미착용 사례가 적발²²⁾되고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개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 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건)	2,114	2,197	2,216	2,235	1,980

※ 자료 : 소방청

이에 개정안은 ① 맹견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으로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의 부착 의무와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의 신고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벌칙²³⁾ 및 과태료²⁴⁾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²⁵⁾,

②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20) 연합뉴스, ‘태안 아파트 단지서 7세 아이·엄마 맹견에 물려 크게 다쳐’, 2022. 5. 20.

21) SBS뉴스, “‘입마개 안 한 맹견이 놀이터를’ 지적에…“사진 찍으려 풀었다””, 2024. 6. 27.

22) 데일리벳, “2022년 집중단속 결과, 동물 미등록 86건·인식표 미착용 333건 적발”, 2023. 8. 11.

23)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4)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25) 이에 따라 인식표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맹견의 소유자등은 개정사항 ①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음

맹견으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맹견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10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를 미부착하는 행위’와 ‘동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식표 대여행위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반면에 인식표 미부착 행위는 단순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의 인식표 미착용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50만원 이하)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를 미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수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동물등록제 개요

□ 추진배경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인수공통전염병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방지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 주요내용

- (등록대상)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서, ①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②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 고양이는 '18년부터 소유자가 등록을 원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가능(자율)
- (등록시행기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자 등
 - ** 등록대행기관이 부재한 읍·면 및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시·도 조례로 동물등록 제외지역 지정 가능(법 제15조제1항 단서)
- (등록내용)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 동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등록형태)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된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

□ 동물 등록현황

(단위: 마리)

구분	계	등록형태	
		내장형	외장형
2024	3,491,607(3,434,624)	-	-
2023	3,286,216(3,244,234)	1,658,538(1,616,587)	1,627,678(1,627,647)
2022	3,054,342(3,025,859)	1,535,128(1,506,651)	1,519,214(1,519,208)
2021	2,782,811(2,766,250)	1,399,233(1,382,672)	1,383,578(1,383,578)

* 괄호안은 “개” 등록수, 외장형 수치는 인식표 포함

□ 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동물보호법 제15조)

- (등록) 월령 2개월령이 이상 경과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법 제15조제3항) → 위반 시 (미등록) 100만원 이하, (소유권 이전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 (분실 시) 10일 이내 변경 신고(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1호)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사항 변경) 10일 이내 변경 신고(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 *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한 한 경우 주소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지자체장이 변경 가능(시행령 제11조 제4항)
 -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죽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유자 변경과 무선식별장치 변경을 제외한 사유의 경우 동물정보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 가능(시행령 제11조제5항)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의무 (동물보호법 제16조)

- 외출 시 **2m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할 것(단, 월령 3개월 미만으로 소유자등이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제외)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할 것
- 외출 시 ①등록대상동물의 이름, ②소유자의 연락처, ③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할 것
-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배경)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지속 발생**(연 약 2,200건)으로 대책마련 필요

* 반려견 개체수/반려견 양육가구 수(추정) : ('12) 439만마리/320만 가구 → ('22) 544/450만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 ('19) 2,154 → ('22) 2,216

- (사육허가제도) 맹견(5종*), 사고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시행하여, 사육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추가 조치

- (대상) 맹견(5종*), 사고견** 대상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 사람·동물에 위해 가한 개(지자체 명령),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소유자 신청)

- (요건) 양육자는 소유 맹견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충족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월령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8개월령 도달 후 중성화수술 완료 및 증빙 필요)

- (신청)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반려인, 영업자)은 시·도지사
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 제출(30일 이내)

- (기질평가제도)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 판단

- (운영)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동물
에 대한 사육허가, 맹견 지정·미지정**, 교육·훈련 명령

* 행동지도사, 수의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

** 사고견 중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된 개

- (평가) 5개* 분야, 12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결과 1점이 한
개 항목 이상에서 나올 경우 재응시** 명령

* 접근 공격성 평가, 놀람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평가, 흥분촉발, 놀람촉발

** 평가점수는 1~5점 척도, 재응시 명령시 교육훈련 권고 가능